

제14조(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)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8조 및 제19조와 「암관리법」 제13조에 따라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,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"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(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9호서식)"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송부하고, 공단 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·관리,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5조(중전의 제14조) 중 "보건복지부장관이"를 "공단이 별도로"로 하고,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별표1, 별표2,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3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는 2017. 1. 1부터 시행한다.

●환경부고시제2016-119호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2016년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16년 6월 24일

환 경 부 장 관

2016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

전년도의 총 출고량은 827,170톤으로 한다.

인구수는 50,801천명으로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환경부고시제2016-120호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,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, 인구수 및 반영계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16년 6월 24일

환 경 부 장 관

201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, 인구수 및 반영계수

전년도의 총 매입량은 330,051톤으로 한다.

인구수는 50,801천명으로 한다.

반영계수는 0.2로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